

2026년도 스마트제조기술 전문기업 시범지정 공고

스마트제조기술의 우수성과 현장 실행력이 검증된 공급기업을 「스마트제조기술 전문기업」으로 시범 지정하고 성장을 지원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스마트제조 기술기업의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.

2026년 8월 24일

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

< 요약 >		
<주요 일정>		
신청 · 접수기간	현장실사	발표
'26년 8월 24일 ~ 9월 29일 18:00	(1차) 10월 1일 ~ 10월 31일	(1차) 11월 9일
	(2차) 11월 2일 ~ 11월 30일	(2차) 12월 8일
<주요 내용>		
구 분	내 용	
목적	• ‘전문기업’ 지정을 통한 시장 신뢰 구축 및 선도기업 성장 지원	
지정분야	• 스마트제조기술산업 4대분야 (자동화, 연결화, 정보화, 지능화)	
지원자격	• 공급기업 역량진단사업의 우수공급기업 기업 중 - 핵심 스마트제조기술 보유활용 기업 - 총 매출액 중 스마트제조기술 매출액이 50%이상 기업	
평가방식	• 서면검토 → 현장 실사(실재성 평가) → 지정심의위원회	
혜택	• 전문기업 전용 사업 트랙 운영 (자율형공장, 피지컬AI 기술 실증)	

• 지정기업 별도공개 및 R&D 등 후속사업
연계 지원

▣ 개요

- (목적) 기술력·현장적용 능력이 검증된 우수 스마트제조 기술기업을 '전문기업'으로 지정, 시장 신뢰 구축 및 글로벌 선도기업 성장 지원
- (근거) 「2026년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세부관리기준」 제15장 (스마트제조기술 전문기업 지정제도)
- (규모) 100개사 내외
- 추진체계

		총괄기관			
		중소벤처기업부			
		추진기관			지정심의위원회
		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			
		운영기관			현장진단원
		(사)			
		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			

▣ 신청 자격

- 신청자격
 - (기본요건) 「중소기업기본법」에 따른 중소기업 및 「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중견기업

* 법인전환·합병·포괄양수도 기업은 신청서 기재 후 개별 검토

◦ (역량진단 요건) 공급기업 역량진단 결과 우수등급을 획득한 기업

* '25~'26년 진단기업 : level 3- 이상, '23~24년 진단기업 : 당시 level 2+ 이상

* * 공고일 전 진단을 완료하여 신청마감일까지 우수등급이 확정된 2026년 진단기업 포함

◦ (기본요건) ①핵심 스마트제조기술을 보유·활용 기업이거나, ②총매출액 중 스마트제조기술을 이용한 사업의 매출액 비중이 50% 이상 기업

□ 신청분야 : 스마트제조기술산업 4대 분야 중 주력 1개분야 선택

* 자동화·연결화·정보화·지능화

□ 지원제외 대상 : 부적격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

< 부적격 사항 >

· 휴·폐업중인 기업	·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
· 유흥·향락업, 숙박·음식점,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	
· 「스마트제조혁신법」 제31조에 따라 지원사업 참여 제한 중인 기업 및 3년내 제재조치를 받은 기업	

▣ 추진 절차

역량 진단	⇒	모집 공고 신청 접수	⇒	서면 검토	⇒	현장 실사	⇒	지정 심의 위원회	⇒	결과 발표 · 이의 신청
----------	---	----------------------	---	----------	---	----------	---	-----------------	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

우수 등급 (신청 자격 확보)		사업 관리 시스 템 (smar t- factor y.kr)		적격 확인		제품· 구축 기술 실재 성· 활용 도 확인 (70점 이상)		현장 평가 결과, 분야 별 분포 종합 검토		사업 관리 시스 템 (smar t- factor y.kr)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	---	--	----------	--	---	--	--	--	---

□ (신청접수) 지정신청서(붙임1) 및 통합기술설명서 작성 후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

* 스마트제조기술산업 4대분야 중 주력 1개 분야를 선택

□ (서면검토) 신청자격·분야·지원 적합성, 결격 여부, 현장확인 가능성 검토(서류 미비 시 보완 1회)

* 8.24~9.19 접수완료기업 대상 9.22 서면검토 실시

□ (현장평가) 기술전문가가 고객현장(도입기업) 방문을 통해 핵심기술·제품의 실재성, 기능 작동, 대표 적용사례의 사실성 확인

* 대표 적용사례의 도입기업 방문을 원칙으로 하며, 보안 등의 사유로 고객현장 방문이 곤란한 경우 실시간 원격화면, 고객담당자 확인 등 대체 확인방법 협의 가능

◦ 6개 항목 100점 만점 중 70점 이상 획득 시 통과

< 현장평가 항목 및 배점 >

No.	평가항목	배점
1	신청내용과 현장의 일치성 및 분야 적합성	25
2	핵심기술의 보유·활용 및 자체 수행역량	20
3	제품·솔루션의 실재성 및 기능 작동·완성도	20

4	대표 구축·납품사례의 사실성 및 기업 수행기여도	15
5	도입현장의 실제 사용· 지속운영 및 유지관리	10
6	도입성과 및 고객 수용성	10

□(지정심의)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지정심의위원회에서 역량진단 결과, 현장평가 결과, 분야별 분포 등을 종합하여 지정 여부를 최종 확정

* 1차 : 10월 말까지 현장실사가 완료된 기업, 2차 : 이후 현장실사가 완료된 기업

□(결과통보 및 발표) 지정 여부를 신청기업에 개별 통보하고, 지정기업 명단은 2026년 11~12월 중 발표

▣ 신청 및 접수

□ 신청기간 : 2026. 8. 24.(월) ~ 9. 29.(화), 18:00까지

* 시스템 마감 시간 이후 추가 접수 불가

□ 신청방법 : 사업관리시스템(smart-factory.kr) 온라인 신청

스마트공장 사업관리 시스템(smart-factory.kr) 접속 → 회원가입 → 로그인 → 사업관리 → 전문기업 지정제도 시범지정 신청 → 신청내용 입력 → 제출완료

□ 제출서류

-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에서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업로드
- 역량진단 시 제출한 서류는 시스템에서 자동 연계되어 재제출 불필요

<제출서류 목록>

번호	서류명	필수여부	제출방법
1	스마트제조기술 전문기업 지정신청서 (붙임 1)	필수	온라인 업로드

2	기업·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(붙임 2)		
3	통합기술설명서 (붙임3, 6쪽 내외)		
4	국세·지방세 납세증명서 (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)		
5	스마트제조 매출비중 증빙	지정기준 매출 신청시	

※ 통합기술설명서는 현장평가 확인 질문자료 및 지정 후 기업소개 원천자료로 활용되므로
구체적으로 작성

▣ 지정 효력 및 지원

- (지정기간) 지정일로부터 3년
 - * 관련 법 제·개정 시행시 유효기간 기산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 안내
- (지정기업 공개)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에 전문기업 명단·기업요약 공개, 등록 공급기업
검색 시 지정 여부 표시
- (지원사업)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 등 사업 신청 시 전문기업 우대
 - (상위AX 사업 전용 참여) 자율형공장 등 고난이도·대규모 과제*를 전문기업 '전용 과제'로 운영
 - * 27년 : 자율형공장, 피지컬AI 기술실증
 - (가점부여) 스마트제조 관련 제조AI 특화과제에 대해 가점 부여
 - (연계확대) R&D, 금융투자, 판로·해외진출 등 후속 지원사업 연계 단계적 확대
- (사후관리) 지정기간 중 자가점검을 실시(추진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름)
-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지정 시 지정취소 가능

▣ 기 타

□ 시범운영 안내

- 시범운영 공고로서 관련 법률의 제정·시행에 따라 세부사항 보완 가능
- 관련법령이 제·개정 시행시 기존 지정기업의 전환·인정, 유효기간의 기산 등은 중소벤처기업부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름

□ 추진 일정

구분		신청 접수	⇒	서면 검토	⇒	현장 실사	⇒	지정 심의 위원회	⇒	결과 발표 · 이의 신청
일자		`26.8. 24 ~ 9.29		`26.9. 22 ~ 9.30.		`26.1 0.1. ~ 11.30 ·		1차. 11.4 2차. 12.5 (예정)		1차 11.9 2차 12.8 (예정)

□ 문의처

구분	기관명	역할	문의처
추진기관	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인공지능혁신추진단	신청·접수,평가	044-300-0932, 0934
운영기관	(사)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	현장평가 운영 및 일정 협의	031-628-9686, 9648, 9691